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# 심사보고서

1996. 6. 10  
행정재무위원회

#### 1. 審査經過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6년 5월 2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6년 5월 28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4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상정 의결

#### 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윤정중)

##### 가. 개정이유

- 재난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재난사고의 철저한 사전예방과 각종시설물에 대한 안전지도·점검기능과 재난상황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고자 재난관리 및 가스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원을 보강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음

##### 나. 주요골자

- 구분청 총정원 조정 (1,008명 → 1,013명)
  - 민방위재난관리과 → 안전지도계 4명 (6급 1, 7급 1, 8급 2)
  - 지역경제과 → 가스안전계 1명 (6급 1)

#### 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: 허영훈)

동조례 개정내용은 제2조중 제1호 구분청의 정원을 1,008명에서 1,013명으로 총 정원을 5명 증원하는 것으로 이는 내부부의 서울시의 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지침과 가스안전관리 기능보강지침이 '96. 5. 2. 시달된 바에 따른 것으로써,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종 대형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역량을 확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필수인원의 증원이라고 사료되며,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(대통령령) 제14조에 따른 총정원의 사전승인이 있었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#### 4. 審査結果 : 원안 의결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61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6. 5. 27.  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# 1. 개정 이유

재난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재난사고의 철저한 사전예방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장 안전지도·점검기능과 재난상황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고자 재난관리 및 가스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원을 보강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음.

### 2. 주요 골자

- 구분청 총정원 조정 (1,008명 → 1,013명)
  - 민방위재난관리과 → 안전지도계 4명 (6급 1, 7급 1, 8급 2)
  - 지역경제과 → 가스안전계 1명 (6급 1)

### 3. 개정 근거

- 시정 12200-337( '96. 5. 2 ) : 가스안전관리기능보강지침 시달
- 시정 12200-338( '96. 5. 2 ) : 지방재난관리기구·인력보강지침 시달

### 4. 개정조례(안) : 따로 붙임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구 분 청 : 1,013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총수)서울특별시 영등포 구의 본청·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 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구 본 청 : <u>1,008명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원의총수)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 구 본 청 : <u>1,013명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